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1
----------	-----

제출연월일 : 2013.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장례식장 사용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50%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진부장례식장 주소를 오대천로 1958-21로 변경 (안 제2조제2호)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사용료 면제 (안 제9조제3항)

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는 사용료 50% 감면 (안 제9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10.25. ~ 2013.11.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1970-11”을 “1958-21”로 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1조 중 “조례로”를 “조례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평창군수가 설치한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운영에</u> ----- ----- -.</p>
<p>제2조(위치) 장례식장은 다음과 같이 둔다.</p> <p>1. (생 략)</p> <p>2. <u>진부장례식장: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로 1970-11</u></p>	<p>제2조(위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1958-21</u></p>
<p>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생 략)</p> <p>② <u>사용료 납부 후 장례식장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형편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u></p> <p>③ <u>행여사망자의 경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 <u>않는다.</u></p> <p>③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u></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p>

<신 설>

제11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평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조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제11조(준용) -- 조례에서 -----

-----  
-----  
-----  
-----  
-----  
-----  
-----.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9조제3항 :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행여사망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제4항 : 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행려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찰 수사에 필요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 나. 추계 결과 : 사용료수입 감소 연간 19,400,000원

- 사용료 면제 : 400,000원 × 36명 = 14,400,000원
- 사용료 50% 감면 : 200,000원 × 25명 = 5,000,000원

## 3. 작성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연락처	(033) 330 - 21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19,400	△19,400	△19,400	△19,400	△19,400	△97,000
지방세							
사용료 수익		△19,400	△19,400	△19,400	△19,400	△19,400	△97,000
세 출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9,400	△19,400	△19,400	△19,400	△19,400	△97,000
	지방세						
	세외수입	△19,400	△19,400	△19,400	△19,400	△19,400	△97,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 활용품)]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 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제29조(장례식장영업)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愛國志士)
3. 전몰군경(戰歿軍警)
4. 전상군경(戰傷軍警)
5. 순직군경(殉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